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

① 신 청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주민등록상) :	
	연락처 : (핸드폰)	
② 전속운송계약	택배사업자 명 :	
	대리점(영업점) 명 :	
	대리점(영업점) 대표자명 :	
	대리점(영업점) 주소 :	
	대리점(영업점) 연락처 :	
전속운송 계약기간 : (혹은 장래 운송물량 확보 현황)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③ 차량정보	차종 :	차명(연식) : ()
	최대적재량 : () kg	형태 : <input type="checkbox"/> 탑형 <input type="checkbox"/> 밴형
④ 운전면허	면허번호 :	
	면허종류	<input type="checkbox"/> 1종 대형 <input type="checkbox"/> 1종 보통 <input type="checkbox"/> 1종 특수 <input type="checkbox"/> 2종 보통
	자격증번호 :	자격취득일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위 신청인 :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위에 기입된 내용은 향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7조제4항에 의거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운영 현황관리에 활용될 수 있음

첨부 :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을”이라 한다) 및 _____ (이하 “병”이라 한다)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약을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 적】

본 계약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약에 따라 “갑”과 “을”·“병”간에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법령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약을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책임과 의무】

- ① “갑”은 택배사업자(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로서 “을”로부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병”과 관계법령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약을 위한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한다.
- ② “을”은 “갑”과 택배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갑”으로부터 일정한 지역 내에서의 영업, 화물의 집화·배송·반품 및 관련 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로서 “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병”에게 택배운송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택배 전용 번호판 사용 등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게 할 관리책임을 진다.
- ③ “병”은 본 계약에 따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약을 받은 자로서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하고, 대리점과의 위탁 계약 등에 따라 택배운송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택배 전용 번호판 사용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④ “갑”과 “병”간에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본 계약 외에는 어떠한 권리 의무관계도 발생하지 않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 3 조【계약내용】

- ① “병”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을”이 위탁하는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전속으로 담당하며, “갑” 및 “을” 외의 제3자에게 운송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갑”과 “을”간의 택배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과 “병”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을”的 지위를 승계·대체한 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 4 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__년 __월 __일부터 20__년 __월 __일까지(2년간)로 하되, 기간만료일 6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 통지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일방의 계약조건의 변경 통지가 있을 시에는 본 계약의 만료일까지 당사자 간 계약조건이 서면 합의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 5 조【택배 전용 번호판 반납】

“병”이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택배운송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이후의 조치에 대하여 “갑” 또는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택배운송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병”은 택배 전용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6 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_____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 7 조【신용정보 조회 승낙】

“을”과 “병”은 “갑”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 및 “병”에 대한 신용조사 또는 신용정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 8 조【기타사항】

본 계약 계약기간 중 본 계약내용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기명날인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조【특약사항】

- ① 본 계약서와는 별도로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본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택배 전용 번호판 사용 등에 관한 계약내용
 2. 제4조 택배 전용 번호판 사용 등에 관한 계약기간
 3. 제5조 택배 전용 번호판 사용 등에 관련된 번호판 반납
- ② “병”的 택배 전용 번호 신청이 불허가 결정되면, 본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계약일자 : 20__년 __월 __일

(갑)

회사명 :

대표대표이사 : (인)

주소 :

(병)

성명 :

(인)

주소 :

생년월일 :

연락처 :

(을)

대리점명 :

사업자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